

## 출항정지명령서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제                |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
| 어선의 명칭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선 장 명  |       |
| 어선번호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 적    |       |
| 총 톤 수            | 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업의 종류 |       |
| 입항일자             |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출항예정일자 | 년 월 일 |
| 출항정지사유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
| 출항정지기간<br>및 해제조건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
| 비 고              | 출항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원<br>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|        |       |

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.  
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 
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  
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 
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